

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규정

제	정	2012. 01. 25
개	정	2012. 05. 30
개	정	2012. 12. 05
개	정	2013. 05. 02
개	정	2014. 03. 20
개	정	2015. 01. 19
개	정	2015. 05. 18
개	정	2017. 02. 08
개	정	2017. 05. 16
개	정	2017. 07. 14
개	정	2018. 10. 17
개	정	2020. 12. 22
개	정	2021. 01. 28
개	정	2021. 04. 28
개	정	2022. 07. 29
개	정	2022. 09. 20
개	정	2023. 02. 07
개	정	2023. 07. 18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의 「정관」 제8조 및 「아주대학교 직제규정」 제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직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산학협력단의 직제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」 및 기타 관련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 장 조 직

제3조(조직) ① 산학협력단에는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학기획팀, 산학지원팀, 산학재무팀, 산학구매팀, 산학감사팀, 산학사업팀을 둔다. <개정 2012.05.30., 2017.02.08., 2018.10.17., 2020.02.28., 2022.09.20., 2023.07.18.> 또한 특별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창의산학교육원과 신산업기술혁신원 및 기술사업화센터를 둔다. <개정 2012.12.05., 2014.03.20., 2015.01.19. 2017.05.16., 2020.02.28., 2022.09.20., 2023.07.18.>

② 창의산학교육원장과 신산업기술혁신원장은 업무를 위임받은 부단장이 겸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업무 상 필요 시 따로 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한다. <개정 2014.03.20. 2017.05.16., 2020.02.28., 2022.09.20.>

③ 창의산학교육원과 신산업기술혁신원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전문조직을 둔다. 각 산하조직별로 장을 두고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5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한다. 단, 수행사업의 특수목적달성을 위해 특별임용교원이나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2.05., 2014.03.20. 2017.05.16., 2020.02.28. 2021.01.28., 2022.09.20.>

1. 창의산학교육원 산하

① 현장실습지원센터 <신설 2014.03.20.>

② 창업교육센터 <신설 2014.03.20.>

2. 신산업기술혁신원 산하

① <삭제 2020.02.28.>

② 기업지원센터

③ <삭제 2020.02.28.>

④ <삭제 2022.09.20.>

⑤ 공유협업센터 <신설 2022.09.20.>

④ 기술사업화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 직속의 기술사업화정책관(CBO; Chief Business Officer)이 겸한다. 기술사업화정책관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5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한다. 단, 수행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특수목적달성을 위해 특별임용교원이나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. <신설 2023.07.18.>

⑤ 산학협력단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, 아주대학교 소속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한다. 다만,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,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한다. <신설 2012.05.30.> <항 번호 변경 2023.07.18.>

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직에 대한 기구는 별표 1과 같으며, 조직별 업무분장 및 업무상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05.30., 2012.12.05., 2013.05.02., 2014.03.20., 2015.01.19., 2015.05.18., 2017.02.08. 2017.05.16., 2018.10.17., 2020.02.28., 2021.04.28., 2022.09.20., 2023.07.18.> <항 번호 변경 2023.07.18.>

제4조(단장 및 부단장 등)

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총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정관 및 규정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임면한다.

③ 산학협력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부단장의 위임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2.09.20.>

④ 제3항에 의거 의료원 산학연협력업무의 효율적인 실무관리를 위해 의료 산학협력 부단장을 따로 두며, 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장이 당연 겸직하여 관장(管掌)하도록 한다. <신설 2014.03.20.> <개정 2015.05.18.>

⑤ 산학협력단장 직속으로 기술사업화정책관(CBO; Chief Business Officer)을 따로 두어 기술사업화

센터장을 당연 겸직토록 하며,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우수성과 발굴기획, 기술이전 등 대학 내 기술 사업화 업무를 정책적·실효적으로 총괄·조정토록 한다. <신설 2023.07.18.>

⑥ 단장 및 부단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직제규정 및 인사관리 제 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22.09.20.> <항번호 변경 2023.07.18.>

⑦ 기술사업화정책관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인사관리 제 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23.07.18.>

제5조(직원 및 연구원 등) ① 산학협력단이 임용하는 직원 및 연구원의 임면, 보수,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며, 본 대학교 총장(이하 “총장” 이라 한다)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.

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및 연구원으로 하여금 본 대학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대학교 교수, 일반직원 및 연구원 등을 산학협력단으로 배속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배속된 자는 본 대학교 신분을 유지한다.

④ 산학협력단에 근무 배치하는 직원의 직군별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, 연구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2.12.05., 2014.03.20., 2015.01.19., 2017.02.08., 2020.12.22., 2023.02.07.>

제6조(감사의 운영) ①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감사를 두어 운영하며, 산학협력단 정관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.

② 산학협력단 자체감사 수행 시의 기준과 시행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「아주대학교 자체감사규칙」을 준용하여 진행한다.

제 3 장 협의회 및 위원회

제7조(산학연협력관련 협의회)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
2.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
3. 산학연협력 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
4.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

제8조(위원회 활동) ① 산학협력단에는 그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심의 및 자문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: 중요 운영사항의 심의 및 자문
2.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: 저작물 및 직무발명 등에 의한 지식재산권 관리, 운영사항 심의
3. 산학협력단 규정류 자문위원회: 규정류 제·개정 사항에 관한 자문

②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장으로 정한다.

③ 기타 운영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필요 시 제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각 위원회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주대학교 「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」 을 준용한다. <신설 2012.12.05.>

제 4 장 운영위원회

제9조(구성) 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 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05.30., 2022.07.29.>

② 위원은 단장이 추천한 교내외 인사를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, 연구정보처장, 기획처장 및 의료 산학협력 부단장(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장), 산학협력단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12.05.30., 2014.03.20., 2015.05.18., 2017.07.14.>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산학협력단의 기본운영 방침과 사업계획
2.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력단 정관의 변경,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산학협력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11조(회의 소집과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단,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정보처장, 기획처장, 위원 중 호선된 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7.07.14.>

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

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⑤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12조(자문 및 위탁) ① 단장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학협력단 직원 이외의 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, 일정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사항에 의한 제3조(조직)의 운영은 2011년 10월 0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관련한 창업보육센터의 소속변경은 대학의 관련규정 개정 시기에 맞추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산학기획팀-285: 2021.04.28.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산학기획팀-798: 2022.07.29.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산학기획팀-1183: 2022.09.20.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산학기획팀-2318: 2023.02.07.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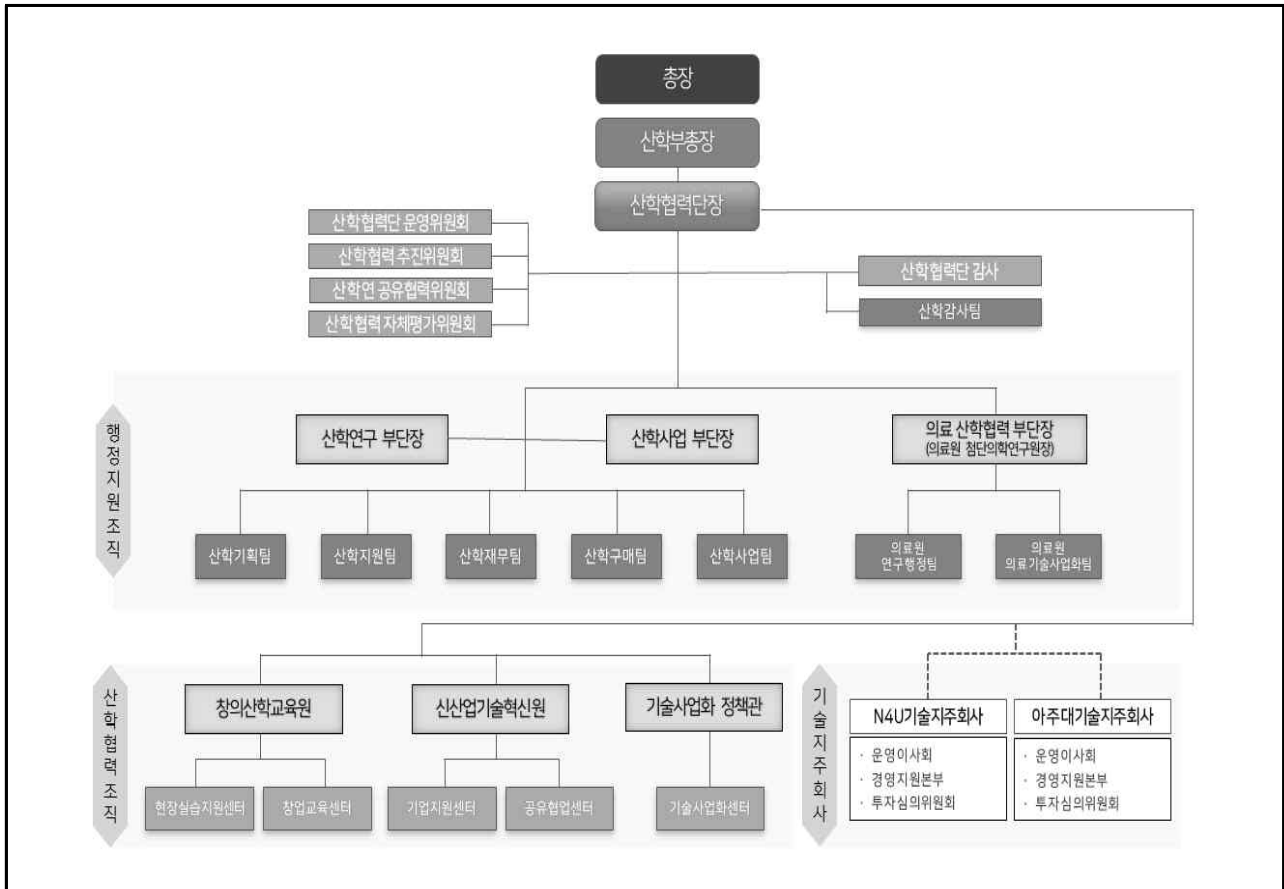
부 칙 <산학기획팀-1254: 2023.07.18.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<별표 1> 기구표 및 직원정원표

□ 기구표



□ 직원정원표

직 급	직 명	직군별 정원(명)							비 고
		전문직					연구관리직	계약직	
		변리사	공인회계사	기술마케팅	전산분야	기타분야			
D	책임매니저	/	/	/	/	/	2	/	아주대학교 소속 보직자 및 정규직원 근무자는 학교의 정원 기준에 따름
C	선임매니저	/	/	/	/	/	2	/	
B	전임매니저	/	/	/	/	/	2	/	
A	매니저	/	/	/	/	/	6	/	
소 계		1	1	2	2	8	12	44	
합 계		70							